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 장

기 관 명	공 주 시
위반 및 처분내용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2018. 8. 30.부터 2019. 3. 26.까지 '부의장 소속직원, 상근직원 격려'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주 98병(4,900천원)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일부는 소속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시의원에게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아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물품 구입시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아 물품의 단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물품을 구입하고서도 검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을 엄중 「**경고**」 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11 월 4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